

세종캠퍼스 Flipped Class 운영 시행세칙

2021. 1. 1. 제정

2023. 5. 1. 일부개정

<교수학습정보센터, 교무학사팀>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세종캠퍼스 원격수업 운영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Flipped Class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Flipped Class'란 온라인 수업자료를 수업 전에 학습관리시스템에 올려 두어 수강생들이 스스로 수업내용을 먼저 학습하도록 하고, 그 후에 진행되는 본수업에서 토론·토의 등 심화학습에 중점을 둬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교육방식이다.

- 제3조(온라인 수업자료) ① Flipped Class를 위하여 학습관리시스템에 올리는 온라인 수업자료는 담당교원이 직접 제작한 자료 외에 다양한 형태의 공개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온라인 수업자료에는 담당교원의 강의동영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온라인 수업자료에는 각 주차별로 학습평가(학습자의 학습목표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제4조(Flipped Class 유형) ① Flipped Class의 유형은 Type 1, Type 2 및 Type 3로 구분한다.
- ② Flipped Class Type 2와 Type 3은 온라인 사전학습 후에 소그룹활동이 추가되며, 담당교원이 멘토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③ Flipped Class의 유형별 수업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형		수업 진행 방식
Flipped Class	Type 1	온라인으로 사전학습을 하고, 본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 진행
	Type 2	온라인으로 사전학습을 하고, 학습자들이 그룹별로 소그룹활동을 한 후 본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 진행
	Type 3	온라인으로 사전학습을 하고, 학습자들이 그룹별로 소그룹활동을 한 후 본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PBL 기반 수업 진행

제5조(수업 시간과 구성요소) ① Flipped Class의 강의 형태에 따른 수업시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강의 형태	수업시간 구성		총 수업 시수
	사전수업 (Pre-class)	본수업 (In-class)	
주당 1시간	자율	50분	50분
주당 2시간	온라인 학습활동 포함 50분 (강의동영상 재생 25분 이상)	50분	100분
주당 3시간 (택1)	모듈1 온라인 학습활동 포함 50분 (강의동영상 재생 25분 이상)	100분	150분
	모듈2 온라인 학습활동 포함 100분 (강의동영상 재생 50분 이상)	50분	
주당 4시간 (택1)	모듈1 온라인 학습활동 포함 50분 (강의동영상 재생 25분 이상)	150분	200분
	모듈2 온라인 학습활동 포함 100분 (강의동영상 재생 50분 이상)	100분	
	모듈3 온라인 학습활동 포함 150분 (강의동영상 재생 75분 이상)	50분	

- ② 사전수업(Pre-class)이란 강의동영상 재생시간과 온라인 학습활동(퀴즈 및 토론 등)을 포함한 시간을 의미한다.
- ③ 강의동영상의 시간과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의동영상은 여러 개의 동영상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해당 강의동영상을 모두 합하여 사전수업 강의동영상 재생 시간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2. 강의동영상에는 학습목표와 그에 부합하는 학습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④ 소그룹활동의 시간과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그룹활동 시간은 온라인 학습활동 시간에 포함하며, 최소 25분 이상이어야 함
 2. 소그룹활동은 사전수업의 이해도 점검 및 본수업 참여 준비를 위한 학습자 간 질문과 답변 및 토론 등으로 구성함
- ⑤ 본수업(In-class)은 오프라인수업 외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수업을 포함할 수 있다.
- ⑥ 강의 형태가 주당 2시간 이상인 수업은 사전수업을 총 수업시수에 포함하며, 사전수업 시간과 본수업 시간의 합이 총 수업시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 ⑦ 제1항의 수업시간 구성 외에 수업의 특성에 따라 사전수업과 본수업의 시간 조정이 필요한 강의는 세종캠퍼스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3. 5. 1.>

제7조(강의개설의 허가) ① Flipped Class의 운영을 원하는 교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다.

- ② Flipped Class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종캠퍼스 원격수업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해당 교과목이 온라인활용 교육 교과목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 ③ 총장은 세종캠퍼스 온라인활용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 교과목에 대한

Flipped Class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Flipped Class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Flipped Class의 기본 조건
 2. 그밖에 Flipped Class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조건

제8조(강의개설과 운영) ① Flipped Class 최초 개설 시 담당교원은 학기 시작 전에 교육인
증 워크숍을, 학기 중에 수업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Flipped Class에서는 사전수업과 본수업을 1주의 수업시간 내에서 교대로 진행한다.
다만, 수업의 특성에 따라 교대 진행의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은 2주
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Flipped Class로 운영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본수업 시간에 한하여 강의실과 강의
시간을 배정한다.
- ④ 담당교원은 수강신청 기간 전에 본수업 시간을 정하여 강의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
다.
- ⑤ Flipped Class를 위한 온라인 수업자료는 해당 수업일 2주 전까지 학습관리시스템
에 탑재하여야 한다.

제9조(담당교원의 임무) Flipped Class 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Flipped Class 수업자료의 사전 구성, 강의 설계 및 관리
2. 온라인을 활용한 강의진행 및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통한 이해도 향상 관리
3. Flipped Class 수강생 관리 및 평가
4. 교육보조인력, 멘토 관리 및 소그룹활동 모니터링(해당자에 한함)
5. 그밖에 Flipped Class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담당교원에 대한 지원) ① Flipped Class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의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개발비란 교안작성, 동영상 촬영 및 녹음 등 강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사용
되는 비용을 말하며, 용도 외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2. 강의개발비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Flipped Class 교과목의 교육보조인력 및 멘토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
다. 다만, Tutorial 동시 운영 강의의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제11조(강의 재개설 심의) Flipped Class의 재개설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
을 검토하여 세종캠퍼스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재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Flipped Class 운영 시행세칙의 준수 여부
2. 수강소감 설문조사 결과
3. 기타 재개설의 적합성 여부

제12조(내규 및 지침)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내규 또는 지침으로 정하여 시
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